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SH 연구 ③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

-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법, 산안법 연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I.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함)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라 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각 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배경은 다르지만 양 법은 “국민(노무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재난)”으로부터의 사전예방과 이와 관련되는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난법상의 “사회재난”에 속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로서 재난법은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안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빠른 감염속도로 사망자를 내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대표적 사회재난에 속하며, 코로나19는 서울, 대구 콜센터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즉 직장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 첫 번째 사례로 서울 구로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한바 있으며¹⁾, 이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또한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재난상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에 말미암아 재난법의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고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본의 관련법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법·정책 비교 및 코로나19와 같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안법상 관련 예방·대책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확진자에 대하여 ①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 점, ②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 ③ 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장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산재인정 확진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받고,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 6만 8720원(8590원×8시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일본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우리나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

1. 재난의 정의 및 종류

1. 재난과 재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재난법 제3조 제1호)을 ‘재난’이라고 하며,³⁾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한다(재난법 제3조 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2. 재난의 종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재난법 제3조 제1호 관련)⁴⁾

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재난법 제3조 제1호 관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되어 23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24번째 일부개정을 통하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고 있다(2020년 6월 4일 시행 예정).

3) 재난법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하천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4) 한편 ‘자연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2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재난법 제1조) 하는 것

3

기본이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하는 것(동법 제2조)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⁵⁾

또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② 재난 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74조의3).



5) 또한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본 :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

일본은 ‘이세완태풍’⁶⁾을 계기로 대규모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체제의 미정비와 방재에 관한 통일된 제도의 부재로 인한 쓰라림을 겪고 재해 2년 뒤인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 이하 ‘재해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 재해법상 재해의 정의와 기본 이념,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의 책무 및 권한, 재해예방, 재해긴급대책 등 재해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하여 일본 재해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해와 방재(防災)의 정의

1 재해

“폭풍, 태풍, 호우, 폭설, 홍수, 절벽붕괴, 파편, 태풍, 지진, 분화, 산사태 기타 이상(異常)한 자연 현상 또는 대형 화재 또는 폭발 시설이 미치는 피해 정도에서 이와 유사한 정령에서 정하는 원인⁷⁾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재해법 제2조 제1호)

2 방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재해의 복구를 도모하는 것 (재해법 제2조 제2호)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그 외에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지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재해법 제1조)

6) 1959년에 발생한 ‘이세완태풍(伊勢湾台風)’은 4,697명의 사망자와 401명의 행방불명 그리고 약 7천억 円(엔) 이상의 물적 손해를 일으켰으며, 태풍의 속도와 진로 등 자연적 조건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도시개발 시 방재상의 배려 결여와 수방 체제의 미정비, 부적절한 보고와 지시 등 인재적 측면도 상당하여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7) 정령에서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 다수의 조난을 동반하는 선박의 침몰, 기타 대규모사고”를 말한다 (재해법 시행령 제1조).

2 기본이념

재해대책과 예방에 있어서 ① 일본의 지리적·자연적 특성 고려, ② 국가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주민의 역할, ③ 재해대비 조치 강구에 대한 지속적 개선, ④ 재해발생 직후 필요한 정보의 수집, ⑤ 피해자 원호, ⑥ 재해발생 후 시설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자 원호도모와 부흥 도모하는 것(재해법 제2조의2)⁸⁾

3

도·도·부·현(都·道·府·県)⁹⁾과 시·정·촌(市·町·村)¹⁰⁾의 책무 및 권한

1 도·도·부·현의 책무 및 권한

재해법은 도·도·부·현에 대하여 광역적 지방공공단체로서 스스로 방재에 관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정·촌의 사무·업무를 돕고 종합조사를 행할 책무를 지게하고 있다. 이들 책무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지사(知事)에게는 이하와 같이 종사명령¹¹⁾ 등에 관한 권한 및 시·정·촌장의 응급조치 실시 등에 대하여 지시¹²⁾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시·정·촌의 책무 및 권한

재해법에서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방재에 관한 대책을 실시할 책무와 재해응급 대책 및 응급조치를 실시할 의무, 사전조치 지시(제59조), 피난 지시 등(제60조), 경계구역 설정(제63조), 응급공용부담(제64조), 인적응급공용부담(제65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8) 6개 기본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재해법 제2조의2).

i) 일본의 자연 특성을 감안하여 인구, 산업, 기타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를 토대로 재해 발생을 항상 가정하고, 재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것, ii)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보장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방재 활동 및 자주 방재 조직(주민의 인보(隣保) 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방재 조직) 그 외 다른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방재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 iii)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조합 하여 일체적으로 강구하고 과학적 지견 및 과거의 재해로부터 얻은 교훈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 하는 것, iv) 재해 발생 직후 기타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곤란한 시기이더라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해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입각한 인재, 물자 그 외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v) 피해자에 의한 주체적인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장애의 유무 그 외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기에 응하여 적절하게 피해자를 원호할 것, vi)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설의 복구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도모하고 재해로부터 부흥을 도모할 것

9) 도·도·부·현이란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광역·보통·지방공공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의 총칭을 말한다. 현재 도쿄도(東京都) 1개, 홋카이도(北海道) 1개, 교토부(京都府)와 오사카부(大阪府) 2개, 현(県) 43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 총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고 있다.

10) 시·정·촌은 지방공공단체인 시(市)·정((군, 町, 郡)·촌((군, 村, 郡))을 뜻한다.

11) 종사명령이란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종사명령, 주민 등에 대한 협력명령, 물자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관명령, 병원 등의 관리, 물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71조).

12) 시·정·촌장의 응급실 조치 실시 등에 대한 지시라 함은 시·정·촌장에 대하여 응급조치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고 그 외 시·정·촌을 원호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하거나 시·정·촌장에게 재해응급대책 실시 및 그 외 시·정·촌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72조).

4

일본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의 특성

일본 재해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사람과 사회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인위적 재난’ 또는 ‘인위적 행위로 인한 재난’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재해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는데 교토시의 경우 ‘인위적 재난’ 발생 시, 방재회의를 사무국으로 하고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한다. 이 기구를 통하여 지진, 수해, 산사태,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 ‘인위적 재난’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대응하고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³⁾

Ⅲ.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본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상 코로나19 예방 관련 규정

이하에서는 사회재난이 콜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때 우리 산안법과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상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코로나19 예방 관련 규정

1 산안법의 목적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②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③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④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법 제1조)

2 산업재해의 정의

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② 업무에 관계되는 ③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④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2호).

13) 「災害対策基本法」第二章 “防災に関する組織”。

3 사업주의 책무

1) 보건조치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동조 동항 제6호)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¹⁴⁾



2) 작업중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1조)¹⁵⁾.

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코로나19를 중대재해¹⁶⁾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54조).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잠복기간이 있고 개별적 감염 등의 질병의 진행 속도가 상이하고 감염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예방이나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 중대재해로 인식하기 까지 시간이 걸려서 예방과 대응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감염병과 같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현명하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⁷⁾

4) 질병자의 근로 금지와 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법 제138조 제1항)¹⁸⁾.

14)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7조).

15)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8조).

16) 중대재해란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산안법 제2조 제2호).

17)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 및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제167조).

18)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71조).

4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63조)¹⁹⁾.

나아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로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동조 제1항 제1호), 보건뿐만 아니라,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5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법 제52조 제1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관리감독자등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²¹⁾.

2

일본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상
코로나19 예방 관련 규정

1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의 목적과 노동재해의 정의

1) 목적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이하 ‘노위법’이라 함)」은 「노동기준법」과 더불어 ①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위해(危害)방지기준 확립, ② 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의 촉진조치를 강구하는 등 ③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④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동시에 ④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노위법 제1조)

19)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7조).

20)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72조).

2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

2) 산업재해의 정의

① 근로자의 취업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② 작업행동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③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하는 것 (법 제2조 제1호)

2 사업주의 의무²²⁾

1) 보건조치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법 제22조),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건축물 등 기타 작업장에 관하여 통로, 바닥면, 계단 등의 보전 그리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휴양(休養), 피난 및 청결에 필요한 조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 및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2) 작업중지

우리 산안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 환자의 취업금지

사업주는 전염성 외, 기타 질병으로 ① 병독 전파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 ② 심장, 신장, 폐 등의 질병으로 노동으로 인해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전 각 호에 준하는 질병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것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그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법 제68조,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4)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²³⁾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에 관하여 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③ 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④ 그 외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71조의2).

22) 사업주의 의무 중 보건조치, 작업중지, 환자의 취업금지 규정을 위반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9조).

23) 우리 산안법은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일본 노위법 상의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 규정과 같이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산안법의 목적(제1조), 사업주의 의무(제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원조를 동반한다(법 제72조의3, 제72조의4).

3 원청사업주의 의무

원청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29조)²⁴⁾.

IV.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자연재해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한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서 전 국민에 걸친 재난상황임과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에서도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산안법 영역의 문제가 되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산안법 상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²⁵⁾

일본의 재해법과 산안법,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관련 사항

일본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재해법의 적용에 대한 논거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⁶⁾

4월 16일,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 이후, 재해지원에 노력해온 변호사 단체가 재해법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대처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²⁷⁾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법이 유효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언이란 재해대책기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시민에게 자택 대기를 요구할 수 있고 ② '경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③ 극심재난제도(激甚災害制度)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고용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 보험에 대한 기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3가지 지원책이 초기에 가능하다는 내용이다.²⁸⁾

24) 여기서 원청사업주는 우리 산안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우리 규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 일본에서는 「노동계약법(労働契約法)」에서 “안전배려(安全配慮)”를 명시하고 있다(제5조). 和田脩一, “自然災害への対応と安全配慮義務の関係”,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RMLレポート(2015).

26) “コロナで困る人に「災害対策基本法」が有効な訳, 「自然災害とみなして対応を」弁護士提言(<https://toyokeizai.net/articles/-/345817>)”.

27) 提言の中心になった津久井進弁護士(효고현 변호사회(兵庫県弁護士会)).

28) 「災害対策基本法等で国民の生命と生活を守る緊急提言(令和2年4月16日)」, 【Covid-19】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災害」としてとらえた政策を一弁護士が緊急提言(<https://news.yahoo.co.jp/byline/okamoto/tadas-hi/20200419-00173476/>).

이 변호사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해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상한 자연 현상(異常な自然現象)’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재해’로 파악하여 현재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대책 외에 재해 대책법이나 기타 재해대책 관련 법제를 이용하면, 감염증의 추가 확산 방지, 생활 등의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재난법과 같이 “사회재난” 또는 “인위적 재난”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진, 쓰나미, 화산, 풍수해, 원자력, 토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대책 관련 법률들과 특히 대규모재해 발생 시의 복구·부흥에 대하여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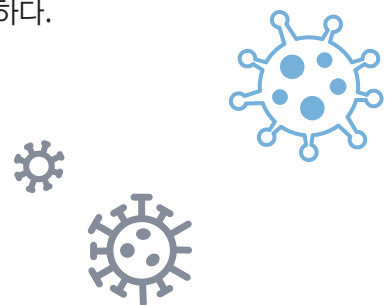
한편 노위법은 산업재해방지를 기본 목적(노위법 제1조)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의 정의로 내리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특히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서 우리와 같이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법 동법 제22조),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근로자의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3개의 개별 조문으로 구성된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는 별개의 장(章)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적 측면과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별개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³⁰⁾

이와 관련하여 노위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주 및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노위법 제68조의2). 이 규정은 앞서 살펴본 “질병자의 취업금지(노위법 제68조)”조항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조문으로 노위법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질병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일본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감염증을 “자연재해”로 받아들일지, 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볼만 하다.



29) “災害法体系について(www.jma.go.jp/jma/kishou/minkan/wxad/.../2-2-2.pdf)”.

30) 이와 관련하여 노위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주 및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노위법 제68조의2).

우리 산안법 상 감염병 예방 의무 검토

우선 코로나19의 질병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정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신종감염병증후군(질병 코드 : U07.1)’으로 구분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동조 동호의 타).³¹⁾



따라서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19는 산안법상의 질병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³²⁾, 산안법 상 국가(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사업주(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해당 영역·범위에서 질병을 예방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³³⁾

업무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 한하는 한, 우리 산안법 제2조는 질병을 산업재해로 보고 있고, 감염병은 질병이므로 코로나19는 산안법상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 중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법 제138조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의 확산을 직접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직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산안법은 감염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한 근로 금지·제한(법 제138조 제1항),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산안법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산업재해로서의 위험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에 말미암아 사회·자연재난은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산안법상 규정(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제138조), 지진 등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대피방법(제64조) 등과 같은 훈련)에서 나아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국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가 재난을 예방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32) 후에서 살펴 볼 산안법 제138조의 “질병자의 근로 금지와 제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정신질환과 함께 질병에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

33) 앞서 설명한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산재인정 건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면, ①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 점, ②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 ③ 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산재인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和田脩一, “自然災害への対応と安全配慮義務の関係”,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RMLレポート, 2015
- »藤川久昭, “災害時における従業員保護とリーガルリスクマネジメント”, リスクマネジメントTODAY, TOKYO-A3, 2011
- »「災害対策基本法等で国民の生命と生活を守る緊急提言(令和2年4月16日)」, [Covid-19]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災害」としてとらえた政策を一弁護士が緊急提言, 2020
- »“コロナで困る人に「災害対策基本法」が有効な訳, 「自然災害とみなして対応を」弁護士の提言”(https://toyokeizai.net/articles/-/345817)”

[관련법률]

▶ 주 법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산업안전보건법」
- » 「災害対策基本法」
- » 「労働安全衛生法」

▶ 기타 관련법률

- 자연재난

- » 「자연재해대책법」
- » 「재해구호법」
- » 「하천법」

- 사회재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